

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6. 1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5월 31일, 전승학 의원 외 11명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6월 16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백남환 의원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정확한 규정과 업무범위 등을 지정하고, 단순 업무의 보조를 벗어나 대학생의 재능과 관심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구 본청 및 소속기관,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마포구와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상 (안 제2조)
- 아르바이트 운영시기와 근무방법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아르바이트 운영계획 수립 및 기관 수요조사 (안 제5조)
- 아르바이트 대상자 선발 (안 제7조)
-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운영 및 보상 (안 제9조 및 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운영조례안은

마포구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정확한 규정과 업무범위 등을 지정하고, 단순 업무의 보조를 벗어나 대학생의 재능과 관심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 본청 및 소속기관,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마포구와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조례안은 2017.6.9.~6.13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 대학생들이 공공기관에서 직장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, 또한 취직 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마포구와 아르바이트 대학생 상호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